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 2.



주요업무보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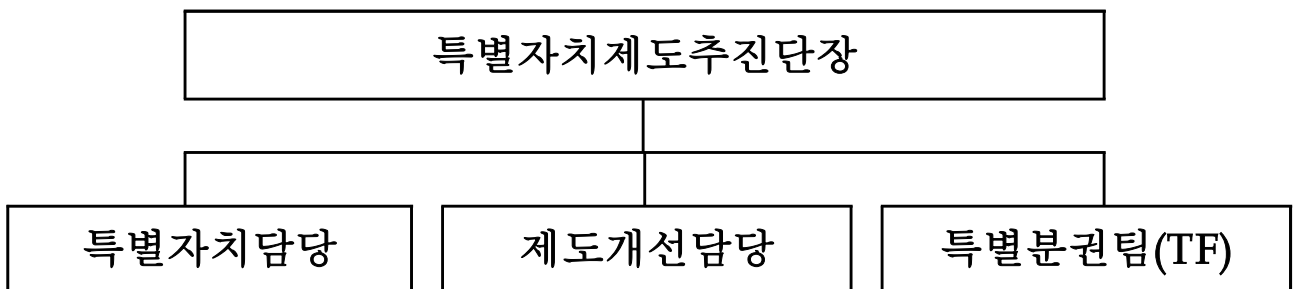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일반 현황	3
<input type="checkbox"/> 비전과 목표	7
<input type="checkbox"/> 2018년 주요업무계획	11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13
○ 지방분권 개헌의 해 도민역량 결집	14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시범 운영	15
○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성과평가 추진	16
○ 지방분권 모델의 완성과 연계한 제도개선 추진	17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양권한 활용도 제고	18
<input type="checkbox"/> 도정질문 추진상황	19
<input type="checkbox"/>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5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기구 및 현원

○ 기 구 : 1단 2담당 1팀



○ 현 원 : 14명

(단위 : 명)

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14	1	-	3	10

주 요 기 능

- 특별자치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추진
- 특별자치도 완성 국정과제 업무 추진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국가-제주 사무 배분
-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확보 총괄
- 조세, 규제 혁신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성과분석·홍보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제주에서 열린 지방분권, 파도타고 전국으로

비전

도민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목표

도민이 주도하는 자기 결정권 확보

전략과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선도

지방분권 시범운영

정부 권한 단계적
이양

실행계획

- ▶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추진
- ▶ 지방분권 개헌의 해 도민 역량 결집
- ▶ 연방제 수준의 사무배분을 통한 자치분권 선도

-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
-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시범운영 추진

- ▶ 청정과 공존의 6단계 제도개선 조기 마무리
- ▶ 분권모델과 연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및 성과평가

2018년 주요업무계획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자치입법권 등 특례 개헌안에 반영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로 도민들의 숙원사항 해소

□ 필요성

- (국 가) 중앙집권 국가를 지방분권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적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필요
- (제 주)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 기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을 위하여 고도의 자치권 및 사무배분 등 차등분권에 대한 위헌의 소지 해소 필요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16.12월)
 - 전체 위원회 회의 3회, 소위원회 회의 5회 개최
- 도민,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3회('17.6~9월)
- 국회 개헌특위와 공동으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17.9월)
- (도지사) 국회, 행안부 등 개헌안 건의('17.3월, 9월, 11월, '18.1월)
- 시도지사협의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18.1월)

□ 추진계획

- 시·도 협업,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18.2월)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동향파악 및 대응 추진
 -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등 개헌안 건의 추진
-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헌법개정안 동향 파악 및 대응 추진
 -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 시·도와 협업,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회,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반영 추진

지방분권 개헌의 해 도민역량 결집

-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 이해도 증진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분권모델 완성에 대한 지지 형성

□ 추진방향

- 헌법개정안 발의 전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 제고
- 지방분권 도민 자치역량 강화 및 민간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17.4.25.): 위원 15명
 - 도 분권협의회 4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참석 4회
- 지방분권 개헌 전문가 토론회(9.16.) 및 토크 콘서트 개최(12.19.)
- 지방분권 개헌 제주 결의대회 개최(10.24.)
- 찾아가는 읍·면·동 지방분권 개헌 설명회 실시: 21회
- 지방분권 개헌 도민 여론조사 실시(12월)

□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및 전국 연대활동 강화: 연중
-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및 지방분권 홍보 강화
 - 도민 대상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지원 및 협력 강화
 - 도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 행사 및 교육
 - 지방분권 홍보 및 서명운동 등 활동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시범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통하여 정책체감도 제고
-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선도 및 지방분권국가 조기 실현 기여

□ 국정과제 개요(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 '18년 분권과제 및 이양사무 발굴·이양, '19년 제주특별법 개정

□ 추진상황

-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을 통한 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수립('17.7월)
-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보고('17.8월)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위원회 회의('17.8월, 부지사 주재)
-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협약('17.11월)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17.12월)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 회의 개최('18.1월)

□ 추진계획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마련(~'18.2월)
- 제주도 분권모델 완성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정(~'18.3월)
-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핵심과제에 반영(~'18.4월)
- 제주특별자치도 국세 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18.4월)
- 자기결정권 확대를 통한 분권모델 완성방안 마련(~'18.12월)
 - 사무배분, 입법체계, 조세자율성, 금융특구, 핵심산업 육성 등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성과평가 추진

-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이 제주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성과평가를 통해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마련

□ 성과평가 개요

- 근거 : 제주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평가 협약('06.8)
- 평가대상 : 매해 설정된 성과지표 평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도민만족도 조사 → 현지실사
-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는 제도개선, 도정업무 등에 반영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평점	81.7점	80.9점	82.4점	76.8점	81.2점

* 평점 등급 : 85점이상:우수, 84점~70점 : 양호, 69~55점 : 보통, 54점이하 : 미흡

□ 추진방향

-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업무와 관련된 지표 설정 및 추진 성과평가
 - 2017년 기준 총 46개(실적지표 37개, 주민만족도 조사 9개) 설정
- 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제주특별법 관련 제도 보완 및 도정업무 개선에 활용

□ 추진계획

- 2017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 : '18. 2. ~ 11.
 - 국무조정실에서 성과평가단을 별도 구성하여 추진실적 평가
 - 추진실적 자료 제출(2월)→서면평가·설문조사·현장평가(3~6월)
 - 2017년 성과평가 결과 중앙부처 의견수렴 및 제주지원위 보고 : '18. 8.
 - 2017년 평가결과 활용계획 수립 : '18. 11.
- 2018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지표 확정 : '18. 2.
 -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갈등관리, 주거 등) 추가

지방분권 모델의 완성과 연계한 제도개선 추진

-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담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마무리 및 지방분권 모델의 완성과 연계한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방향

- 자기결정권 강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균형발전 과제에 따른 제도개선

□ 추진상황

(6단계 제도개선)

- (도의회) 동의안 제출·보고('16. 7.) 및 본회의 의결('16. 9.)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42건) : '17. 8. 4.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개정안 국회 제출 : '17. 12. 28.

(7단계 제도개선)

- 7단계 제도개선 추진방향 논의 위한 워크숍 개최 : '17. 12. 8.
- 단계별 제도개선 미반영과제 자료집 제작·배포 : '17. 12.

□ 추진계획

- 6단계 제주특별법개정안 국회입법 추진 등 연내 마무리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18. 2.)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균형발전 과제와 연계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18. 3.~ 12.)
 - 도민공모 및 설명회,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 활용 제도개선 발굴 관련 토론회 수시 개최
- 자치재정권 강화 등 핵심과제 발굴('18. 3.~ 12.)
 - 제주특별법 1~5단계 미반영 과제 재검토 추진 등
-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으로 제도개선 추진동력 확보
 -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과 연계 추진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이양권한 활용도 제고

- 5차례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 받은 권한에 대하여 내실 있는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특별자치 역량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된 권한의 적극적 활용
- 미활용 이양권한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한 활용률 제고
 - ※ 이양권한 세부 활용실태조사('17. 9) : 5,189건(활용 4,326건, 미활용 863건)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관리 시스템 운영 : '16. 12. ~
 - 제주특별법 조문 및 활용 실태 변동사항 등 수시 업데이트
- 부서별 이양권한 활용 실적 부서평가(BSC) 가점 반영 : '17. 2.
- 이양권한 활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 '17. 3. ~ 9.
 - 담당 공무원 면담,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미활용 사무 활용방안 제시
- 이양권한 활용 담당자 교육 실시 : '17. 5.
- 실·국별 이양권한 활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7. 6.
-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부서 전파 및 업무 반영 협의 : '17. 11.

□ 추진계획

- 이양권한 활용 관리 시스템 지속 운영
- 이양권한 활용상황(조례 제·개정 등) 모니터링 : 연중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미활용 부서 후속조치 추진 : '18. 1. ~ 12.
 - 미활용 이양권한에 대한 조례 제·개정 추진 적극 독려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추진 상황				비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2		2		
제356회 제2차 정례회	1		1		
제350회 임시회	1		1		
제347회 제2차 정례회	-				

완료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추진중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1	'17. 4.10	손유원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2	'17.11.17	고충홍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추진불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창일 의원의 헌법적 지위확보 안에 대한 견해는? ○ 제주도가 구상하는 헌법적 지위확보안의 실현 가능성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와 노력에 대하여는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의견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점이 모아지다 보면 제주의 숙원해결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조례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 자치분권 강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므로 헌법적 지위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왔음. 프랑스, 포르투갈 등 외국사례들도 있어 법리적으로도 문제는 없음. 다만, 제주도의 세가 약한 것이 약점이므로 가급적 우군을 많이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16.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8회(전체 3회, 소위원회 5회) ○ (도지사) 국회의장, 개헌특위 위원 등 개헌안 건의('17.3.16, 9.26) ○ 지방분권 촉진 조례 제정('17.3.8), 지방분권협의회 구성('17.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분권협의회 회의 개최 4회 ○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3회 개최('17.6.16, 6.9, 8.18) ○ 국회 개헌특위와 공동으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17.9.25) ○ (도지사) 행정안전부 등 정부 개헌안 건의('17.11.29, '18.1.17)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18.1.9) ○ 한국헌법학회와 업무협약 및 국회 세미나 개최('18.2.1)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18.2월) ○ 국회 개헌특위 및 정부 동향 파악 및 적기 대응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개헌 도민운동본부 설치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분권팀
	○ 도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차원에서 운동본부가 가동되면 지원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출범: '17. 12. 5. - 지방분권개헌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17. 12. 14.~'18.2월 ○ 지방분권운동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17. 12. 24. ○ 2018년도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18. 1. 2. - '18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예산: 50백만원(민간위탁)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 단체현황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단 체 명: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 목 적 - 민간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도민 의견 결집 및 대변, 사회분위기 조성 등 지방분권운동 추진 ○ 구성현황 - 대 표 자: 김기성(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 김정수(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 구성인원: 발기인 26명(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 주요사업내용 - 전국단위 지방분권운동단체와 연대활동 추진 - 지방분권 도민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 도민의견 수렴 및 결집을 위한 가두홍보, 서명운동 등 추진 </div>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8	-	8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특별법 제도개선 시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논리 마련 후 과제 제출하여 미반영 사례 최소화	추진중
2	○ 2018년 개헌이 후 지방분권 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기능 강화, 자치 재정권 강화 등 제주 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에 대책 마련	〃
3	○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범도민적 운동·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	〃
4	○ 권한이양사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이후에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양 사무의 활용률 제고 노력	〃
5	○ 도민복리증진 관련 사무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특별법 제도개선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람	〃
6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원위원회의 위상 강화	〃
7	○ 도민 복리증진 관련 국무총리실 성과평가 지표 추가 추진	〃
8	○ 연구용역 발주시 권한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을 철저히 실시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81
1. 특별법 제도개선 시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논리 마련 후 과제 제출하여 미반영 사례를 최소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input type="checkbox"/>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15.2), 도민공모('15. 8.), 원탁토론(19회), 도·국무조정실 실무협의(2회) 운영 •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회의(3회), 도·국무조정실 합동 워크숍(1회), 신성장산업 분야 전문가초빙토론회(1회),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 지원 신청에 따른 연구결과 논의(3회, 카지노업 분야, 조세분야 등), 도의회 보고(6단계 추진상황 등), 도민설명회 개최(1회), 도의회 동의안 제출과제 확정 및 의회 제출(75개과제, '16. 7. 6.) ○ 과제안 확정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회 6단계 제도개선과제안 수정동의(92개과제, '16. 9. 9.) • 6단계 정부제출 과제 확정 및 정부제출(88개과제, '16. 9. 30.) • 국무조정실 주관 중앙부처 협의 추진('16. 11. ~ '17. 7.)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42건, '17. 8. 4.)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입법절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17. 8. 23. ~ 10. 10.), 공청회('17. 9. 15.), 국무회의('17. 12. 26.), 대통령 재가('17. 12. 27.), 국회 제출('17. 12. 28)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절차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 시 법리검토·대응논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12명) 분야별 워킹그룹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전문가 2명 활용 • 제도개선안 사전 법리검토 체계 구축 → 법제협력관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형평성 등 차등분권에 대한 위헌소지 해소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71

2. 2018년 개헌이 끝나면 우리 도는 지방분권 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기능 강화, 자치 재정권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연구('17.2~10월, 경북대)
- 제주특별자치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17.6~'18.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 연구('17.12~'18.1월, 충북대)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로드맵 마련(~'18.2월)
- 국세 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17.10~'18.4월, 제주대)
 - 국세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방안, 국세의 자율성 부여방안, 국가와 제주 포괄적 재정조정방안, 카지노세 과세 도입방안 등

□ 향후계획

- 제주 분권모델 완성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18.4월)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 연구('18.1~11월,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배분 연구('18.1~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금융특례, 경제·산업 혁신방안 연구('18.1~11월, 제주연구원) 등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91
3.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범도민적 운동·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17.4.25.): 위원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정책 개발과 지방분권 촉진활동 등 지원 자문: 3회 개최 ○ 지방분권 개헌 전문가 토론회 개최(9.16.): KCTV 7회 녹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재호 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 이익현 법제연구원장, 권영호 교수 ○ 지방분권 개헌 제주 결의대회 개최(10.24.): 도민 등 300여 명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lk Concert, 지방분권개헌 제주결의문 발표, 퍼포먼스 등 ○ 도민과 공무원 대상 설명회 및 분권토크쇼 개최 등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장 회의(9.7.), 재외도민 향토학교(9.20.), 도청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10.10.) 지방분권 개헌 관련 설명 • 찾아가는 읍·면·동 지방분권 개헌 설명회 개최(21회) •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공감 토크콘서트: 서귀포시(11.2.), 제주시(11.7.) •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 개최(12.19.): 도민 등 800여 명 참가 • 지방분권 Q&A 리플릿 제작·배포: 10,000부 ○ 지방분권 개헌 도민 여론조사 실시(1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및 전국 연대활동 ○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및 지방분권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대상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라디오·IPTV 등을 통한 홍보 ○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등 민간단체 행정적 지원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81
4. 권한이양사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이후에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양 사무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권한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6.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상황 변동 사항 수시 업데이트 ○ 부서별 이양권한 활용 실적 부서평가(BSC) 가점 반영 : '17. 2. ○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 : '17. 3. ~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미활용 사무 활용방안 제시 ○ 실·국별 이양권한 활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7. 6. ○ 이양권한 활용 담당자 교육 실시 : '17. 5. ○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부서 전파 및 업무 반영 협의 : '17. 11.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관리 시스템 운영 ○ 이양권한 활용상황(조례 제·개정 등) 모니터링 : 연중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미활용 부서 후속조치 추진 : '18. 1.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활용 이양권한에 대한 조례 제·개정 추진 적극 독려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81

5. 도민복리증진 관련 사무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특별법 제도개선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17.9월)

1~5단계 권한이양	세부사무	활용	미활용	비 고
4,537건	5,189건 (100%)	4,326(83.4%)	863(16.6%)	

추진상황

- 이양권한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6.12 ~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상황 변동 사항 수시 업데이트
- 이양권한 활용 강화 계획 수립 : '16.12.
 -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부서별 이양권한 활용 실적 부서평가 반영
 - 이양권한 관리시스템 운영, 실국별 이양권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실시 : '17.3. ~ 9.
 - 담당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미활용 사무 활용방안 제시
- 실·국별 이양권한 활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7.6.
 - 실·국별 이양권한 활용 현황 및 향후계획 등 보고
- 부서별 이양권한 활용 실적 부서평가(BSC) 가점 반영('17.2.) 및 이양권한 활용 담당자 교육 실시('17.5.)
- 이양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부서 전파 및 업무 반영 협의 : '17.11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관리 시스템 운영 : 연중
-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이양권한 분류 및 활용상황 모니터링 : 연중
- 도민 대상 특별자치도 체감도·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8.4.

처리상황 | 완결 (),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71
6.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원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제도개선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p>□ 추진상황</p> <p>① 대통령직속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소속으로 제주특별위원회 설치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8.24. 안성호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장 건의 • 2017. 8.29. 행정안전부 윤종진 자치제도국장 등 건의 • 2017. 9. 1.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건의 • 2017. 9. 8.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건의 • 2017. 9.12. 오영훈 국회의원 면담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현안 회의 2회(10.23, 11.3) ○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업무협약(17.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기관 : 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17.12.6, 정부서울청사)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 회의 개최(18.1.8) ○ 자치발전위(5급 1) 및 지역발전위(5급 1) 인력 파견(18.1.12) ○ 제주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18.1.15), 토론회(18.1.19) ○ 제주-세종 특별위원장과 제주분과위원회 간담회(18.1.25) ○ 제주분과위원회 전문가 초빙 워크숍 개최(18.1.26) <p>② 국무조정실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존속기한 : ~18.6.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위 사무처 상설화(연장)을 위한 국회 협의(17.11.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 상설화(연장)을 위한 지원위사무처 존속 필요성 설명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 협의추진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본격적으로 운영(분기별 1회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발굴, 의견수렴 및 도의회 보고, 위원회 심의 등 ○ 지원위 사무처 상설화(연장)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원발의 및 통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감안 지원위 위상 등 종합 검토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71
-------------	-----------------------------

7. 도민 복리증진 관련 국무총리실 성과평가 지표 추가 추진

처 리 결 과

지표현황 : 3개 성과목표·46개 성과지표

성과목표 (3개)	성과지표 (46개)
1. 선진적인 지방 분권 실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실적 등 18개 지표
2.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실적 등 15개 지표
3.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구현	청정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 실적 등 13개 지표

추진상황

- 2017년 성과평가 시행계획 확정 및 2016년 성과평가 실시
 - 2017년 성과평가 시행계획 확정(제주지원위 심의) : '17. 2.
 - 2016년 추진실적 및 도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7. 2. ~ 6.
 - 2016년 성과평가 결과 제주지원위원회 보고 : '17. 8.
 - * 성과평가 결과 : 81.7(양호등급)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 확정 : '17. 12.
- 2018년 성과평가 지표 설정 관련 국무조정실, 소관부서 협의 : '17. 12. ~
 - 2018년 성과평가 지표 작성지침 통보(국무조정실→도) : '18. 1.
 - *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갈등관리, 주거 등) 개발 내용 추가

향후계획

- 2018년 성과평가 지표 국무조정실 제출 : '18. 1.
- 2018년 성과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제주지원위 심의) : '18. 2.
- 2017년 성과평가 추진 : '18. 2. ~ 6.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추진불가 ()
------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81
8. 연구용역 발주시 권한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12. 1~3단계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 : 한국지방재정학회(126억) • '09. 12. 제주지원위원회 의결 : 부가세 환급액과 상계처리 • '14. 10. 부가세 상당액 3년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함 • '15. 6. 제주 MICE 산업 육성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대체 결정 (매년 국비 100억원 3년간 지원) • '17년 현재 국비 20억 반영, 제주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추진 중임 ○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7.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 : 한국지방재정학회(94억)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인 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 추진과 관련하여 국방 등 국가준립사무를 제외한 연방제 수준의 사무배분 추진('18년 연구) ○ 제주자치도 국세이양 등 연구('17.10~'18.4월, 제주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도내 발생 국세 징수액과 국유재산 등 이양 추진 등 소요재원 연계 검토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추진불가 ()